

국가인재기본법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26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김영호 · 박은정 · 손명수
장경태 · 강준현 · 문정복
김동아 · 임미애 · 박상혁
김문수 · 김원이 · 백승아
김준혁 · 차지호 · 김준형
의원(15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 반도체 · 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와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 · 확보 · 활용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 · 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

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과 국가·사회·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을 강조한 ‘인재정책’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정책 관련 범정부·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재정책의 수립·총괄·조정·점검·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인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정부는 인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위

원회를 두고, 국가인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교육부장관은 인재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국가인재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13조).

마. 교육부장관은 교육·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국가석좌교수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석좌교수의 교육·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국가인재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재정책의 수립·총괄·조정·점검·평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산업 구조 및 고용 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문화예술, 체육,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전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란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의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인재정책”이란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인재지원사업”이란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수한 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재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인재정책의 수립

제6조(국가인재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인재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인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재의 양성·확보·활용 관련 규제 개선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4. 독서교육 증진 등 인재양성의 기반이 되는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위한 산학연협력 및 교육기관·산업계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위한 중·장기 인재수급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재의 양성·확보·활용 관련 정보관리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인재의 양성·확보·활용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인재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10. 인재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재의 양성·확보·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조정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인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인재

정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인재정책의 추진체계

제9조(국가인재위원회) ① 정부는 인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교육부장관과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인재의 양성·확보·활용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재의 양성·확보·활용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국가인재정책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재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첨단분야

나. 법률·의료·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

다.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라. 독서교육 분야

마. 산학연협력 활성화 분야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재 양성·확보·활용 분야

사. 지역인재의 양성·확보·활용 분야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인재정책 및 인재지원사업의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

4. 인재의 양성·확보·활용과 관련된 예산 등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인재의 양성·확보·활용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재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석좌교수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석좌교수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국가석좌교수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인재정책을 수립하고 인재의 양성·확보·활용과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재 양성 · 확보 · 활용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인재정책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인재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지원
2. 제17조에 따른 인재정보의 생산 ·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제22조에 따른 인재지원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의 지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우수 인재의 지원 및 인재 양성 · 확보 · 활용 기반 조성

제14조(국가석좌교수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 ·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국가석좌교수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연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국가석좌교수로 지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

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단서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국가석좌교수로 지정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석좌교수의 지정, 지정 취소, 지원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수인재의 선정) ① 교육부장관은 우수인재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인재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해외인재의 유치 등) 정부는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무조건 또는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인재의 발굴·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인재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 ① 정부는 인재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인재의 양성·확보·활용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인재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인재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 관리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제1항의 인재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인재통계조사) ① 정부는 인재의 양성·확보·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인재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 등에 관한 실
태조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재에 관한 조사

② 정부는 해외인재의 확보·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 등과 협력
하여 해외인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재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기업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 또는 자료 제출을 요
청받은 기관 또는 기업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자료 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재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인재통계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재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재통계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 교육부장관은 인재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제20조(인재 양성·확보·활용 우수기관 등에 대한 지정) 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양성·확보·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기관 등에 대한 지정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재 관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⑤ 그 밖에 지정의 대상·기준·절차 등 우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기관 등과의 지원 및 협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인재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재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재지원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인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재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재지원사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인재정책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인재정책센터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은 이 법에 따라 구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인증

을 받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은 이 법에 따라 인재 양성·확보·활용 우수기관 등에 대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재정책”으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국가인재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재위원회”로 한다.

③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를”을 “「국가인재기본법」 제3조를”로 한다.

④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국가인재기본법」”으로 한다.

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나목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국가인재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재위원회”로 한다.